

##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므로서 공사운영의 탄력화를 통한 운영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3. 주요골자

- 임원의 수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안 제9조)
- 공무원의 파견조항을 신설함. (안 제16조)
- 공사의 하부조직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함. (안 제19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년도개시 35일전까지, 결산은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24조)
- 사채발행시 사채의 총액 한도액을 신설하고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제29조)

### 4. 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건설공급을 통하여”를 “주택건설·공급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제4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8. 기타 공원개발사업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원)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법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하부조직) 공사의 하부조직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1개월 전에”를 “35일 전까지”로, 제2항중 “4월”을 “3월”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여이익금의 2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미처분 잉여금

2. 이익준비금

3. 사업준비금

제29조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채의 발행총액은 공사 납입자본금과 사업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 공급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주택건설공급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u> .....
제5조(정관) ①(생략) 1~13(생략) (신설)	제5조(정관) ①(현행과 같음) 1~13(현행과 같음) 14. <u>자본금에 관한 사항</u>
제7조(사업) (생략) 1~3(생략) 4. <u>재개발사업</u>	제7조(사업)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도시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u>
5~7(생략) 8. <u>기타 토지, 주택관련사업으로</u> <u>시장이 위탁하는 사업</u>	5~7(현행과 같음) 8. <u>기타 공원개발사업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u>
제9조(임원) <u>공사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u> 1. 사장 1인 2. 이사 5인이내 3. 감사 1인	제9조(임원) <u>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
제16조(공무원의 파견) <u>공사 설립 당시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사에 파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u>	제16조(공무원의 파견) <u>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정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하부조직) ① <u>공사의 사장</u> <u>밑에는 감사, 총무이사, 건설이사</u> <u>를 둔다.</u>  ② <u>제1항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u> <u>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u>	제19조(하부조직) <u>공사의 하부조</u> <u>직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u>공사의</u> <u>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u> <u>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u> <u>년도 개시 <u>1개월전</u> 시장에게 제</u> <u>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u> <u>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u> <u>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u>  ② <u>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u> <u>당해년도 종료후 <u>4월이내에</u> 완료</u> <u>하여야 하며, 결산완료후 결산서</u> <u>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u> <u>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u>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u>공사는</u> <u>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u> <u>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u> <u>다.</u>  1. <u>이월결손금의 보전</u> 2. <u>사업준비금의 적립</u>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u>공사는</u> <u>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u> <u>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u>  1. <u>이월결손금의 보전</u> 2. <u>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u> <u>때까지 잔여 이익금의 20분의 1</u> <u>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u> 3. <u>사업준비금으로 적립</u>

질 의	답 변
<p>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처분 잉여금</li> <li>2. 사업준비금</li> </ol>	<p>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처분 잉여금</li> <li>2. 이익준비금</li> <li>3. 사업준비금</li> </ol>
제29조(사채의 발행) ①(생략)  (신 설)	제29조(사채의 발행) ①(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총액은 공사 납입자본금과 사업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생략)	<p>③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p> <p>④(현행 제2항과 같음)</p>

## 6.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입원) ① 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③ 부사장·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65조(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자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결손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의2(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0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① 공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제15조 및 제16조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20 이상은 자본금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 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2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기관의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 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년월일
3.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③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상    법

제470조(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3. 大邱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 1. 審查過程

- 제출일자 : 1993년 6월 11일
- 제출자 : 대구직할시장
- 회부일자 : 1993년 6월 12일